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88
----------	------

발의연월일 : 2025년 11월

발의자 : 최훈중 의원

1. 제안이유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시정이 출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정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시정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나.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 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명시함(안 제5조)

3. 제정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하남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하남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직위의 명칭과 관계없이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임기)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에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현황

(2025. 10. . 현재)

연 번	자치단체명	법 규 명	제·개정 일	소관부서	비고
1	경기도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2025-10-10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공공기관담당관	
2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2024-07-15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3	경상남도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	2023-05-10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04-10	광주전략추진단	
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2-07-29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2023-03-01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2022-12-29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2025-09-29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9	충청남도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03-10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